

=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=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5. 9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8. 5. 13

다. 상 정 일 자 : 제1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('08. 5. 26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최삼림 총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2008. 1. 1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여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「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」이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신설(안 제3조의2)
- 준용규정 일부변경(안 제5조)

3. 관계법령

- 지방공무원법(제 46조)
- 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(행정안전부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본 조례개정안은

- 2008. 1. 1부터 시행된 공무원여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여비지급의 어려움과 혼선이 야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

- 2008. 4월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」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
나. 현행, 국내여비 정산제도는

- 일비와 식비는 정액제로 지급하고, 운임과 숙박비는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이 대부분으로 실비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징구에 어려움이 있고
- 장기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교육여비를 사비(私費)로 사용 후 사후 정산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음.

다.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은

- 당초 국내여비 지급제도의 개선취지를 살리면서 제도시행 과정에서 야기된 부작용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